

제25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2025. 2. 17.

사 회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478호로 2025년 2월 3일 이순우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상위법의 제명이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전체에서 「자원순환기본법」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변경

나.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의 근거 마련(안 제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입법예고(2025.02.04.~2025.02.11.)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상위법 중 하나인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개정하고,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1조(목적)는 상위법인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2022.12.31. 시행 2024.01.01.)됨에 따라 개정된 제명으로 규정하였음. 한편, 조문 중 “위임된 사항” 문구를 삭제하였는데, 이는 본 조례안에서는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무와 권한을 부여한 1)부분만 규정했을 뿐,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 없음에 따라 해당 문구를 삭제함
- 또한 목적규정은 해당 자치법규의 2)해석 지침이 됨에 따라,

1) 안 제3조(집행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4조(자금 등의 지원), 안 제7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2) 법제처 <2022 자치법규 길라잡이> 85p

입법취지나 목적이 종합적·포괄적으로 나타나도록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쓰레기 줄이기”의 내용을 추가하여 규정

- 안 제2조(구청장의 책무)제1항은 기존 간결하지 않은 문장을 정비하여 핵심 사항만 규하였으며,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단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대로 붙여썼으며, 제3호에서는 “시행”계획을 “집행”계획으로 정정
- 안 제3조(집행계획의 수립·시행)은 상위법령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및 서울시 시행계획 명칭을 「서울특별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8조에 규정된 명칭으로 정정
- 안 제4조(자금 등의 지원)제1항은 상위법에 규정된 용어로 변경하여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함
- 한편 제2항을 신설하였는데, 환경부훈령 「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³⁾제13조에는 “경제적 유인 제공”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서울시⁴⁾6개 자치구도 관련 조항을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해당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됨. 한편, 해당 조항은 우리 구에서 활발하게 운영 중인 「쓰다점빵」에서 종량제 봉투를 제공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임.

3)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13조(홍보·주민참여 촉진) 시장·군수·구청장은 반상회, 지역언론 매체 등을 통해 분리수거 품목과 배출요령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경제적유인 제공 등 주민참여 촉진수단을 통하여 관할구역내의 분리수거 및 통합배출 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구로, 관악, 마포, 성북, 송파, 용산

〈쓰다점빵 추진실적〉

연도	수 거 량(kg)				봉투교환 (장)	참여인원 (명)
	소 계	투명페트병	종이팩	건전지		
2022년	64,223	43,207	3,394	16,579	106,138	44,752
2023년	92,215	48,725	7,499	35,991	184,102	71,665
2024년	104,596	49,694	6,066	48,836	278,319	103,318

□ 쓰다점빵 운영

○ 추진기간: 2025. 3. ~ 11. 매주 목요일 15:00~19:00

※ 8월 휴서기 한달 미운영

○ 운영장소: 분리배출거점 등 75개소

○ 운영인원: 영재지원단 170명

○ 운영내용

- 분리배출한 재활용품을 거점현장에서 종량제봉투로 교환
- 정부합동평가 지표 등을 고려하여 재활용품 교환품목 지정

< 재활용품 교환품목 및 개수 >

	투명페트병(투명 무색 생수·음료수병) 30개	➔	종량제봉투 10L 1장
	종이팩(멸균팩 포함) 50개		
	투명페트병&종이팩 혼합 50개		
	폐건전지 20개		

○ 검토결과

-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2021.09.24. 시행 2022.03.25.)하여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이행을 위한 순환경제의 활성화를 촉구하고 있으나,
- 기존 「자원순환기본법」은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에만 초점을 두고 있음에 따라 생산·소비·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순환이용 촉진을 통해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로 전부개정(2022.12.31. 시행 2024.01.01.)됨.
- 이에 따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에 맞추어 인용조항 및 법률제명 등을 정비하였으며,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상금,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앞에 주요 내용에서 조항별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규정하였으며, 법체계 적합성 제고를 위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고 자료

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산·유통·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환경제”란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를 말한다.
2. “순환경제사회”란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순환경제를 달성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는 사회를 말한다.
3. “순환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 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된 물질 또는 물건을 다시 자원으로 재사용 및 재생이용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련의 활동
 -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4. “순환원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거된 물질 또는 물건의 전부·일부를 원형 그대로 또는 가공을 거쳐 순환이용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순환자원”이란 제21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거나 지정·고시한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6.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7. “자원순환산업”이란 폐기물을 최대한 순환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제도를 연구·개발하는 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業種)의 산업을 말한다.

8. “자원순환시설”이란 생산공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데 사용되는 시설·장비·설비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
2. 내구성(耐久性)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
3.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4. 발생한 폐기물은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순환이용할 것
 - 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
 - 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
 - 다.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
 - 라. 재사용·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분담 및 관할구역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5년마다 관할지역에 대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 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 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제출 및 승인·변경승인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13조(홍보·주민참여 촉진) 시장·군수·구청장은 반상회, 지역언론 매체 등을 통해 분리수거 품목과 배출요령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경제적유인 제공 등 주민참여 촉진수단을 통하여 관할구역내의 분리수거 및 통합배출 체 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